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7월 1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6년 7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6. 9. 13)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 상택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4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결과를 공시할 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 구성원 :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
- 임 기 : 2년

○ 위원회 심의내용(안 제3조)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운용상황
- 특수공시 선정 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회의개최(안 제5조)

- 정기회의 : 정기공시시 개최(매년 8월)
- 임시회의 : 수요발생시 개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는 매년 8월에 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동 조례 제정시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1회 할 수 있나?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그럴 경우 중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연임은 계속 가능함.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통상적으로 마포구 상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동일인물이 중복 선임되는데?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계속 지적이 있어 왔으나 되도록 전문가나 각종 상위법에 근거한 대학교수, 변호사와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취지에 맞춰서 하고 있음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심도있게 위원회 구성을 해주기 바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상위법에서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는?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 5월부터 조례제정을 준비했으나 의회가 제4대에서 제5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두르지 못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 이유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4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결과를 공시할 대상 및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골자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 구성원 :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 임 기 : 2년

나. 위원회 심의내용(안 제3조)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운용상황
- 특수공시 선정 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다. 회의개최(안 제5조)

- 정기회의 : 정기공시시 개최(매년 8월)
- 임시회의 : 수요발생시 개최

3.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6. 5. 25 ~ 2006. 6. 14)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6. 26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②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 중 “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삭제한다.